

Issue 004

KOREAN NEWS DIGEST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التيميمي و مشاركون
ALTAMIMI & CO.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지난 3년 반 동안 단교 중이었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4개국이 외교 관계 복원에 합의하고 영공, 육로 및 해상 국경을 다시 개방하였습니다. 그간 카타르와의 교역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아국 기업들에게는 실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와 최근 이란의 국내 선박 억류 등 중동지역 내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아국기업이 중동지역에서 사업활동 시 고려해야 할 요건 역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동 각 국가들은 관련 법·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동 현지에서 새로운 법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 상의 괴리가 존재하여 또다른 불확실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번째 Korean News Digest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중동에서 현재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거나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아국 기업 관계자분들께 해안을 제공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도 저희 Korea Group은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중동 전역의 법률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rea Group 배상

주요 연락처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Jiwon Ha

Senior Counsel
Dubai, UAE
j.ha@tamimi.com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Riyadh, Saudi Arabia
h.song@tamimi.com



Dukgeun (Thomas) Yun

Senior Associate
Dubai, UAE
dg.yun@tamimi.com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CONTENTS

| | | |
|----|--|----|
| 01 | DISPUTES | |
| | Form v. Substance: the requirements for an enforceable commercial agency agreement in the UAE | 1 |
| | Consultant report versus court appointed expert: proving material breaches and terminating a commercial agency | 2 |
| | Qatari arbitration law: to apply or not to apply | 3 |
| 02 | CORPORATE | |
| | Another Game Changer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UAE | 4 |
| | Amendments to the UAE Commercial Agencies Law: broadening the scope | 5 |
| | Virtual Asset Activities | 6 |
| | Using an SPV as a holding company | 7 |
| | Requirements to disclose real beneficial ownership of companies in the UAE | 8 |
| | Solving national ownership restrictions in Iraq | 9 |
| | Free Zone incorporation in Jordan | 10 |
| 03 | CONSTRUCTION / PROJECTS | |
| | Managing commercial risk in construction contracts | 11 |
| | Incentivising investment: Jordan's new Public Private Partnership Law | 12 |
| | Positive, progressive and promising: Qatar introduces a PPP law | 13 |
| 04 | COVID-19 | |
| | COVID-19: its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 14 |
| | COVID-19: Force Majeure under Saudi law and Shari'ah | 15 |
| | Highlights of Dubai Customs' measures to mitigate COVID-19 impacts | 16 |
| 05 | NEWS | 17 |
| 06 | KOREA GROUP DEALS & CASES | 18 |
| 07 | KOREA GROUP NEWS | 19 |

Form v. Substance: the requirements for an enforceable commercial agency agreement in the UAE

- 해외 무역업자 또는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랍에미리트(Unted Arab Emirates; 이하 “UAE”)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직접 별도 생산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공급을 전담하는 에이전트(Commercial Agent)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에이전트는 UAE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UAE에서는 별도의 법령(UAE Commercial Agencies Law - Federal Law No. 18 of 1981; 이하 “에이전트 법”)을 두어 공급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급계약의 적용 범위”를 다룬 최근 두바이 대법원 판례(Dubai Court of Cassation Judgment 731 of 2019)를 통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992년에 UAE 소재 법인(이하 “상고인”)은 해외업체(이하 “피상고인”)에서 자사 제품의 독점 유통을 전담할 에이전트(이하 “독점 에이전트”)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현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등록하였습니다. 당시 피상고인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독점 에이전트는 2015년에 청산되었습니다.
- 2016년에 피상고인은 에이전트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 이하 “CAC”)에 실제 상고인과 독점 에이전트 간 계약 상에 상고인을 커머셜 에이전트가 아닌 단순 유통업자로 언급한 점과 실제 계약서 양식이 에이전트 선임 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닌, 단순 공급계약이었음을 근거로 기 등록된 공급계약의 무효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CAC는 독점 에이전트 청산 시점에 이미 공급계약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실제 상고인과 피상고인 간에 서면계약의 부재를 근거로 상고인과 독점 에이전트 간에 체결된 공급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두바이 대법원에서는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대리하여 UAE 내 제품 등록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상고인을 피상고인의 에이전트로 간주할 수 없고, 피상고인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고인을 피상고인의 에이전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gust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form-v-substance-the-requirements-for-an-enforceable-commercial-agency-agreement-in-the-uae/>

Consultant report versus court appointed expert:

Proving material breaches and terminating a commercial agency

- 최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 연방 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은 에이전트 (Commercial Agent)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Case No. 247/2019)에서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아닌, 외부 컨설턴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material) 위반행위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은 이를 인정하였는바, 본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인도 소재의 여객·화물기 운영업체(이하 “항소인”)는 UAE 내에서 자사의 여객·화물기 판촉활동을 담당할 현지업체(이하 “피항소인”)를 선임하였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피항소인이 독점 에이전트가 아닌, 일반 판매업자(general sales agent)이며, 임기는 3년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용역계약을 현지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에 에이전트 계약으로 임의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에이전트 관련 분쟁담당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 이하 “CAC”)에 해당 용역계약 해지 및 등록 내역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인은 용역계약이 기간이 짧고,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에이전트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계약 상에서도 피항소인을 일반 판매업자로 지칭했을 뿐만 아니라, 피항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해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나, CAC 및 1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이후, 항소 법원에서는 실제 용역계약 상에 피항소인을 독립적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항소인이 제공한 용역은 통상 에이전트의 용역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용역계약의 등록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는 피항소인이 커미션을 수취한 내역을 근거로 용역계약을 사실상 에이전트 계약으로 간주해야 함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항소 법원에게 실제 피항소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 법원은 용역계약을 에이전트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피항소인의 위반행위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인은 연방 대법원에 재상고하였고, 외부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피항소인과 또다른 판매업자의 실적을 비교하고, 피항소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항소인의 손실내역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가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연방 대법원은 두 보고서를 모두 검토 후, 항소인의 손을 들어주어 용역계약 해지 및 등록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onsultant-report-versus-court-appointed-expert-proving-material-breaches-and-terminating-a-commercial-agency/>

Qatari arbitration law: to apply or not to apply

- 카타르는 2017년 4월 12일 처음으로 중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는 UNCITRAL 모델법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으며, 종전 민사 및 상사절차법의 중재 관련 내용들을 대체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재법 발효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중재법 적용을 부정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본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2013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동 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피고가 중재인 선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민사 및 상사절차법 제195조에 근거해 카타르 1심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중재법 시행 후이므로 민사 및 상사절차법은 적용되지 않고 중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카타르 중재법 발효 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재조항이 2013년 1월 체결되었기 때문에 종전 민사 및 상사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중재법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제한한 것으로, 중재법 제3조(“중재법은 발효 당시 진행 중인 중재사건 및 발효 후 개시한 중재사건에 적용된다”) 및 제4조(“민사 및 상사절차법 제190조 내지 제210조와 그 밖에 중재법에 반하는 조항들은 폐지되었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l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qatari-arbitration-law-to-apply-or-not-to-apply/>

Another Game Changer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UAE

지난 2020년 11월 UAE 에서는 기존의 회사법을 개정하고, 특히 201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철회하는 새로운 칙령(Decree)이 발효되었습니다. UAE 에 설립된 대부분의 해외업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 기사를 통해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지분제한

본 칙령을 통해 기존 회사법에서 LLC의 경우 UAE 국적자가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UAE 국적자(스폰서) 없이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토후국 별로 회사 설립 및 라이선스 승인과 관련해서는 각 토후국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DED) 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DED 의 지침 등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Local Agent

UAE 회사법 상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시 요구되던 UAE 국적자의 Local Service Agent(에이전트) 임명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UAE 국적자인 에이전트 없이도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투자법 폐지

외국인의 지분 제한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 제한 요건의 완화를 목적으로 했던 외국인투자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본 칙령을 통해 UAE 회사법이 개정된 대부분의 내용은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지만, 별도로 상기에 언급한 내용의 경우 본 법안이 Official Gazette 에 공표되는 날 짜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실제 효력이 있게 되므로, 따라서 한 국기업들의 경우 지금 현재 바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각 토후국의 DED 에서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LLC 및 Branch 등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ovember 2020

<https://www.tamimi.com/news/another-game-changer-for-foreign-investment-in-the-uae/>

Amendments to the UAE Commercial Agencies Law: broadening the scope

- 지난 2020년 5월 31일, Federal Law No. 11 of 2020 을 통해 UAE 상업에이전트법으로 알려져 있던 Federal Law No. 18 of 1981 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오직 UAE 국적자나 국적자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업체만이 UAE 내 상업에이전트(Commercial Agent)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 UAE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업에이전트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본 법률을 통해 UAE 국적자나 국적자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업체 뿐 아니라, 이제는 UAE 국적자가 51% 지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PJSC 및 해당 PJSC 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업체들도 상업에이전트로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에이전트 계약의 요건, 즉 특정 토후국내에서 독점적인(exclusive) 계약일 것, 반드시 아랍어로 작성되어 적법한 공증절차를 거칠 것 등과 같은 요건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본 법률을 통해 상업에이전트로 등록되어 있어 그간 공모를 통한 추가적인 펀딩이나 자금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던 UAE 국적자들이 이제는 IPO 등을 통해 PJSC 의 요건만 갖추면 그대로 상업에이전트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UAE 내 Family Business 업체들의 사업적 토대와 다양성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gust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mendments-to-the-uae-commercial-agencies-law-broadening-the-scope/>

Virtual asset activities

-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의 가상 자산(종전, 암호화 자산)의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초 ADGM의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SRA")은 ADGM내 가상 자산 활동의 허가과 감독에 관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용어 개정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은 가상 자산("Virtual Assets")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위협 퇴치를 위한 법적, 규율적 및 운영적 조치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가상 자산은 디지털 거래가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가치의 전자적 징표로 정의됩니다.

1. 교환 매체; 및 / 또는
2. 계정 단위; 및 / 또는
3. 가치 저장소(다만 어떤 관할에서도 법적 입찰 지위는 포함하지 않음).

가상 자산은(a) 관할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되지 않으며, 가상 자산 사용자 커뮤니티 내에서 합의된 경우에만 위의 기능을 이행하고,(b) 신용화폐(Fiat Currency) 및 전자화폐(E-money)와 구별됩니다.

- 규제 대상 행위

개정 전 법령은, 암호화 자산의 보관을 정리, 관리, 제공하는 활동인 "암호화 자산 사업 운영(Operating a Crypto Asset Business)"을 투자 차원에서 기존 유사 규제대상활동과는 별개의 하나의 행위(activity)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해당 행위(activity)의 요소를 유사한 성격의 기존 규제 대상 행위로 변경했으며, ADGM에서 가상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암호화 자산 사업 운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규제 대상 행위가 가상 자산 관리를 포함시키도록 "자산 관리(Managing Asset)"에 대한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금융 서비스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ADGM에서 가상 자산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상 자산을 관리하려는 신청인은 투자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상 자산에 한하여 관련 규제 대상 행위에 대한 인가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상 자산 관련 인가는 특정 투자나 금융상품에 관련 수행 활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상 자산 관련 활동 외에 특정 투자 또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FRSA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된 가상 자산 제도는 다음 사람들에게 대해 적용됩니다.

1. ADGM에서 가상 자산을 포함한 규제 대상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의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
2. 가상 자산 관련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개인;
3. ADGM 내에서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다자간 거래 시설을 운영하는 규제 대상 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인증된 투자 교환;
4. 안정적인 코인을 취급하는 신청인 및 권한 있는 자.

- 가상 자산을 취급하는 활동이 투자 및 금융 상품을 다루는 관련 규제 대상 활동으로 이동되었지만, 가상 자산 취급 행위의 인가 신청 절차는 보다 더 엄격합니다. 가상 자산 취급 행위의 인허가 신청인은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FRS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실사 및 FRSA와 협의(제안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 필요한 규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안서의 시연 및 제안된 가상 자산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심층적인 기술 데모 제공);
2. FRSA가 신청인의 프로세스, 역량 및 기술이 충분히 발전된 단계에 있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 제출 및 수수료 지급;
3. FRSA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결과 신청인이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승인;
4. 사전승인 이후 신청인의 요건이 FRSA의 기준을 충족되는 경우 최종 인가. 이는 일반적으로 가상 자산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이지만, 이는 신청인의 운영 테스트 및 기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스템에 대한 제 3 자 검증 완료를 조건으로 합니다.

- 개정된 체제는 추가적인 자산 등급, 즉 가상 자산을 수용하도록 규제 대상 행위를 간소화하고,일반적으로 다양한 자산 등급에 걸친 활동의 성격을 조정합니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 간의 요소 이동으로 인해 규제 접근 방식은 개정 전 제도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gust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virtual-asset-activities/>

Using an SPV as a holding company

- 본고에서는 투자자,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 및 기업이 특수목적회사(이하 “SPV”)를 지주회사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에 등록된 SPV를 전제로 합니다.
- SPV는 주주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한 유형입니다. ADGM SPV를 사용하여 민간 기업(예: UAE 역내회사(on-shore company); 유한 책임 회사(LLC)), 상장 회사 주식, 부동산 및 지적 재산권(IP rights) 등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SPV는 수동적인 활동만 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활동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PV는 건설 회사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SPV 자체는 건설 활동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PV는 직원이 없으며 UAE 취업 또는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ADGM SPV는 등록 목적으로 실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없으며 ADGM에 소재한 계열사(예 : 모회사 또는 자회사) 또는 ADGM에 등록된 기업 서비스 제공 업체의 등록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 ADGM은 영국 보통법 체계 하에 보통법 및 형평법의 특정(개정)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즉 ADGM은 명의신탁 계약 및 신탁 계약과 같은 형평법상 제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UAE 역내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SPV와 형평법상 계약을 조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UAE 현지 소유권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SPV의 장점
 1. 자산 소유의 유연성;
 2. 위험 요소 분리;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지분 보유의 유연성.

SPV와 관련된 기타 고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DGM SPV 연계 요구 사항

ADGM SPV 등록 시 신청인은 회사 규제 기관인 ADGM 등록 기관(Registration Authority)의 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후 SPV는 ADGM, UAE 또는 GCC에 대한 적절한 연결 또는 연계(Nexus)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UAE 또는 GCC에 소재한 개인, 가족 또는 회사의 SPV에 대한 소유 또는 운영;
2. UAE 또는 GCC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SPV;

3. UAE에 연결된 거래를 촉진하거나 실질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SPV;
 4. SPV의 목적은 ADGM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이 ADGM의 상장 또는 ADGM의 거래 플랫폼 또는 거래소에 대해 승인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2. ADGM SPV 및 납세 거주 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s 이하 “TRCs”)
- UAE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94개국과 국제조세협정을 맺고 있으며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TRCs 신청서 검토 및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ADGM SPV는 TRCs의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SPV가 UAE내에 운용 자산을 보유한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에는 TRCs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무부의 재량에 따름).
- ## 3. ADGM SPV 및 경제적 실질 규제(Economic Substance Regulations, “ESR”)

경제적 실질 규제에 관한 내각 결정(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31 of 2019)은 UAE역내 회사 및 경제자유구역에 등록된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경제적 실질 규제는 특정 활동(activity)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activity)을 수행하는 회사는 UAE에서 적절한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SPV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실질 규제에 따라 “지주 회사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SPV가 지적 재산을 소유하는 한 경제적 실질 규제에 따라 “지적 재산권 사업(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도 수행합니다. 이는 SPV가 위의 두 활동(activity)에 대해 설정된 지침에 따라 UAE에서 경제적 실질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결론적으로 ADGM SPV는 투자자,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 및 기존 회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설립할 수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SPV는 주식, 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진 종류 주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 및 명의신탁 계약과 같은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l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using-an-spv-as-a-holding-company/>

Requirements to disclose real beneficial ownership of companies in the UAE

-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와 관련된 조치를 권장하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와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과 같은 국제기구 등의 단체들은 '실질적 소유관계' 체제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소유관계와 관련된 '실질적 소유관계' 제도는 탈세, 부패,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이 기업 등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하여 누가 실제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연합 회원국, 홍콩, 케이맨 제도과 같은 전 세계 여러 관할에서 이러한 체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UAE 내에서는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및 두바이 개발청("DDA")과 같은 일부 프리존들에서 최근 이러한 실질적 소유관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UAE의 투명성 제고 및 글로벌 표준화의 일환으로, UAE 내각은 2020년 실질적 지배자 절차 규정에 관한 내각 결정 제 58호("제58호 결정")를 발표하고, UAE내 존재하는 법인들에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입수 및 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국들에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습니다(특정 예외 제외).
- 적용 면제
본 결정은 프리존을 포함한 UAE에 등록된 모든 법인 또는 회사에 적용되나, 아래 대상은 제외됩니다.
 1. 금융자유구역(예: DIFC 및 ADGM, 독립체로서 경제자유구역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음);
 2. 관련된 수익자(예: 실질적 지배자 절차 규정);
 3. UAE 연방 또는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회사
 4. UAE 법에 따른 투명성 및 공개 요건을 준수한 상장 회사
-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
결정에 따르면,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는 최종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지배구조를 통한 소유, 또는 기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법인/회사에게 궁극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수익자는 대리 거래를 수행하거나 법인/회사에게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는 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들이며 a) 주식 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b) 법인의 의결권을 25% 이상 소유한 사람에 해당 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체가 없거나 누가 이를 충족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됩니다. 만약 그러한 주체를 식별 할 수 없다면 법인/회사의 선임 관리자를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UAE요건은 실질적 지배주주(지배자) 등록부를 유지하고 특정 상황에서 임명된 이사회 이사, 수탁자 및 그 수익자들의 세부 정보는 당국에 제출하여 UAE의 역내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경제에 투명성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 이번 결정은 최근 UAE가 제정한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적 실질 요건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UAE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to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requirements-to-disclose-real-beneficial-ownership-of-companies-in-uae/>

Solving national ownership restrictions in Iraq

- 이라크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은 지분제한 등 여러 법적 제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 또는 수탁자를 활용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이라크 현지 파트너와의 사업**

이라크 파트너는 법인형 합작 또는 비법인 합작회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형 합작회사는 이라크에 회사 또는 외국 법인의 지점을 설립함으로써 설립 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연방에 적용되는 1977년 회사법 제27호(이하 "회사법")은 이라크 회사의 지분 51%를 이라크 국민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의 반자치 지역은 이라크 연방과 같은 회사법은 없습니다. 즉 쿠르디스탄에는 51%의 지분 요건이 없습니다. 쿠르디스탄에 등록되는 회사는 이라크 연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라크 연방내 지점/지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르디스탄에 등록된 기업들은 여전히 이라크 국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연방기업등록청의 특정 조건을 충족 할 경우 이라크 연방의 자회사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법인형 합작 회사 설립의 장점은 일정 금액의 주식 자본에 대한 부채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법인 합작회사보다 설립 비용이 비싸고 설립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비법인 합작 회사는 추가 비용없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비법인 합작투자계약은 파트너 간의 책임만 할당할 수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수탁자 또는 수탁자 지명**

명의수탁자는 이라크 파트너와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고정 보수만 지급하고 이라크 파트너를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계약과 기타 명의신탁계약은 종종 이라크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관할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이라크 법상 용어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라크에는 신탁계약과 명의신탁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은 없으며, 'Waqif'라는 신탁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법적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Waqif 관련 쟁점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ul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solving-national-ownership-restrictions-in-iraq/>

Free Zone incorporation in Jordan

- 일반적으로 요르단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년 회사법 No. (22) (“회사법”)이 적용되며 이는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주주의 확정 및 자본금 납입, 위임장을 통한 권한 위임, 산업 통상 자원부 (“MoITS”)에 회사 등록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 한편 프리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2014년 투자법 제 30호 (“투자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프리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요르단 법의 적용 및 집행이 배제되며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된 회사로 간주됩니다.
- 프리존 내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소득세 및 일반 판매세에 있어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입 및 통관 절차, 외국 통화의 이동 및 라이선스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리존에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투자자의 사업이 프리존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프리존 등록이 여의치 않다면, Aqaba 특구도 해외기업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Aqaba 특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여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해 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프리존이 제공하는 세금 감면 및 면제도 포함됩니다. 2015년 투자 인센티브 규정 No. (33) (“Investment Incentives Regulation”)에 이러한 혜택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ul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free-zone-incorporation-in-jordan/>

Managing commercial risk in construction contracts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본고는 시공자와 하수급인이 현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들과 함께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을 살펴 봅니다.

1. 단기적 고려사항

먼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에 있어 현금 흐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타절되고, 발주처가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상황이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망의 각 단계별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계약관리로 (i)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 그리고 (ii) 향후 클레임을 야기할 지시사항과 사건들을 적절히 기록하는 것의 두 가지 상시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서는 계약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중국적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해야 하지만, 이는 발주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 프로젝트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보다 간단한 절차로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을 들 수 있는데 계약상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증서류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른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UAE의 경우 민법 제247조에서 공사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기적 고려사항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저가에 수주하려는 시공자들의 시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자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이윤 저하의 리스크가 증

가하게 됩니다. 특히 발주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이는 하수급인들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렇수록 시공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계약서 중 (1)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2) 설계변경, (3) 위약벌 규정, (4) 분쟁해결 조항의 내용을 주의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4)와 관련하여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분쟁가액이 중재비용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경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분쟁비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로컬 소송 등으로 분쟁해결 수단을 다층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장기적 고려사항

2020년 전에도 중동에서는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리스크의 적정한 분배를 위한 표준 계약서 및 법령 도입과 현금유동성을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절차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부다비는 공공발주처의 30일 내 대금지급 의무를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공공 부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통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to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managing-commercial-risk-in-construction-contracts/>

Incentivising investment: Jordan's new Public Private Partnership Law

2019년 요르단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PPP 프로젝트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PPP법(Law No. (31) of 2014)을 대체하는 내용의 신 PPP 법(Law No. (17) of 2020)의 법안을 발표했고 최근 발효되었습니다. 신 PPP 법은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PPP 사업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 PPP 법의 입법목적**

신 PPP 법은 PPP 실무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키고 요르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선정, 입찰 및 사업 수행을 위한 PPP 체계를 보다 효율화, 투명화하고, PPP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PPP 사업의 관리감독**

신 PPP 법은 PPP 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장부를 마련하고 있으며, PPP 사업의 관련 부서인 최고위원회(Higher Committee), PPP 프로젝트 유닛 등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 **PPP 사업을 위한 특별기금**

PPP 사업 준비를 위한 특별기금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기금은 사업성 조사, 계약서 검토 및 입찰절차를 위한 자문 계약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됩니다.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는 PPP 사업의 재정 관리와 정부 예산의 분배 감독, 프로젝트별 정부지원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일반적 내용**

신 PPP 법은 사업시행법인의 설립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또한 민간제안 사업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사업 수행 도중 PPP 계약의 수정도 가능하나 관련부처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총사업비의 2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재입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한편 신 PPP 법은 법 발효 당시 이미 입찰절차가 개시된 PPP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조).

-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l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incentivising-investment-jordans-new-public-private-partnership-law/>

Positive, progressive and promising: Qatar introduces a PPP law

카타르는 최근 PPP법을 제정하여 발효하였습니다(Law No. 12 of 2020 on the Regulation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법은 카타르 인프라사업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시설을 비용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PP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PP 담당부서

카타르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이하 "MOCI") 내 PPP 담당부서가 설치되며, 개별 프로젝트 위원회가 입찰 심사, 실시협약 협상 및 낙찰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 PPP 사업의 입찰절차

입찰 방식에는 2단계 입찰,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 수의 계약 및 기타 내각이 승인한 계약 방식 등이 인정됩니다. 입찰참가는 복수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편, (i)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 (ii) 모든 입찰이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iii)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iv)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PPP 계약

PPP 계약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범위, 프로젝트 자산의 소유권, 인허가 취득에 대한 책임, 상호 재정 의무(mutual financial obligations), 서비스 요금의 결정, 품질 보증 방식과 프로젝트 관리운영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감독의 수단, 프로젝트 회사의 비용 보상에 관한 권리, 법령 개정 및 불가항력 등에 관한 리스크 분배의 기준, 계약기간(최대 30년이며, 총리 승인 하에 연장 가능), 주무관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경우 보상 의무, 계약기간 만료, 프로젝트의 조기 또는 일부 해지시 원상회복에 관한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4. 프로젝트 회사(사업시행법인)

주무관청 또한 프로젝트 회사를 사적 부문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PPP 사업 시행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충족하고 주무관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없이도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법인은 계약상 권리 또는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으며, 총리 승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PPP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카타르 법원이 전속적 재판관할을 가지지만, MOCI 장관의 제안과 총리의 승인을 거쳐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 방안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to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positive-progressive-and-promising-qatar-introduces-a-ppp-law/>

COVID-19: its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코로나19로 인한 법률 효과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측면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상 불가항력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이행 불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건설 계약의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Lock-down에도 불구하고 설계 업무 진행은 물론, 건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불가항력보다는 다른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FIDIC 1999 Red Book을 예로 들면, 코로나19가 인력이나 원자재의 수급에 예상치 못한 부족을 초래하거나 관할 부처의 인허가 절차에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기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 혹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예를 들어 social distancing)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기 연장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나 원자재 비용의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계약 금액의 조정 조항은 서명본에서는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계약서에 별다른 구제 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준거법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카타르 법을 예로 들면, 카타르 민법 제187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화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행 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카타르 민법 제171(2)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71(2)조는 계약이 이행 불능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채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를 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상충되는 조항이므로 통상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하에서는 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GCC 국가의 법령도 대체로 카타르 민법 제187조 및 171(2)조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기존 건설 계약에서 가능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중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각국의 경제는 더 적은 수의 프로젝트를 발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건설업계에 더 큰 경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건설 시장은 당분간 발주처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발주처에 유리한 계약 조항 및 계약 금액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자들은 코로나19에 기인한 분쟁을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언제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존재한다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하는데,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분쟁 가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중재 개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체결되는 계약서는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분쟁 가액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 등 각기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eptem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ovid-19-its-impact-on-the-construction-industry/>

COVID-19: Force Majeure under Saudi law and Shari'ah

- 사우디법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법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적용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령 및 샤리아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 사우디는 민법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항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입찰 및 조달법(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 제74조는 정부 기관의 귀책사유나 “긴급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의 반환 혹은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법리를 규율하는 통일된 성문법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우디 법원은 불가항력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샤리아법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에 따른 결론이 샤리아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조항에 우선하여 샤리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샤리아법에 따르면 재난 상황이 계약당사자의 지배 범위에 있지 않고(즉,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킬 경우, 법원은 (1) 계약당사자들의 의무를 재조정하거나, (2)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거나, (3) 재난 상황이 단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우디 법원은 이러한 샤리아법을 적용하여 불가항력에 관한 다양한 판결을 내려 왔습니다. 우선 Board of Grievance의 No. 3/T/1401 판결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의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최저 임금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사에게 예상치 못한 인건비의 증가가 발생한 사건에서(사건번호 No J/1/2246), 사우디 법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최저 임금의 상승은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서 이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에 대해서 발주처도 시공사와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우디 법원은 1997년 No. 3/A/D/9 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초래된 이행 지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공기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사우디 법원은 임차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료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 이러한 사우디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증가 및/또는 이행지체와 관련하여서도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불가항력 법리의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구체적 사안별로 불가항력 법리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불가항력 법리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그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1) 계약상 의무의 재조정, (2) 지체 상금의 면제 및 공기 연장, 혹은 (3) 계약의 해지 및 기지급한 임대료 등의 반환 청구가 될 것입니다.

Jul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ovid-19-force-majeure-under-saudi-law-and-shariah/>

Highlights of Dubai Customs' measures to mitigate COVID-19 impacts

- 코로나19 이후 두바이 정부가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 사업 비용 절감과 자국 내 경제 활성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바이 세관도 2020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이 관련 후속 Notice를 공표하였습니다.
 1. Notice No. 1 of 2020: 2020년 3월~6월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두바이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의 5% 수입관세 납부 후 1% 해당 금액 환급). 또한 통관 시 필요한 5만 디르함(약 1만 3500달러) 상당의 보증금이 면제되고 이미 지불된 보증금은 환불이 됩니다.
 2. Notice No. 2 of 2020: Customs Notice no. 1 of 2018 및 Customs Notice No. 4 of 2010의 모든 조항(세관 신고서 및 필수 원본 문서의 제출 의무 관련)을 효력중지함으로써 통관 수속이 간소화 되고 관련 지출 비용, 지연 수수료 및 과태료가 절감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나 할랄 증명서와 같은 원본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하는 보증금(1천 디르함)도 면제됩니다.
 3. Notice No. 7 of 2020: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가 발생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에 한하여 벌금이 감면되고, 자세한 감면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사법부에서 관세법 위반행위로 부과한 벌금만 적용됩니다.
 - b. 벌금 할부 납부가 가능하며, 남은 할부 납부 기간은 재조정됩니다.
 - c. 두바이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는 건의 경우 미납 벌금이 절감됩니다.
- 또한 이 조항은 금지 물품과 관련하여 처해진 조치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과된 벌금의 80%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관세를 전액 납부해야만 하고 두바이 세관에서 부과된 벌금에 한하여 법원이나 관련 심사 기관에 제기한 모든 세관 소송을 취하하여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반관세법(Common Customs Law No. 85 of 2007) 제85조에 따라, GCC 관세 위반은 벌금 부과로 처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 거래 총액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새로 시행되는 이 조항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highlights-of-dubai-customs-measures-to-mitigate-covid-19-impacts/>

List of Accolades

Year of 2020

Reference: <https://www.tamimi.com/about-us/awards/>

| No. | Name of Award | Category |
|-----|------------------------------------|--|
| 1 | Legal Era Middle East Awards 2020 |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 |
| 2 | | Regional Law Firm of the Year |
| 3 | Middle East Legal Awards 2020 | Regional Law Firm of the Year |
| 4 | | Banking, Finance and Restructuring Team of the Year – Highly Commended |
| 5 | | Construction Team of the Year – Highly Commended |
| 6 | | Rising Star Award – Private Practice (Natalia Kumar) – Highly Commended |
| 7 | | Most Promising Newcomer Award – Private Practice (Kieran Lavis) – Highly Commended |
| 8 | WealthBriefing Awards MENA 2020 | Best Legal advice provision for UHNW individuals, Families or Wealth Managers |
| 9 | IFLR Middle East Awards 2020 |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 UAE |
| 10 | |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 Qatar |
| 11 | | Rising star of the Year – Muhammad Mitha |
| 12 | | Deal of the Year: Debt and Equity – GEMS Education HY |
| 13 | | Deal of the Year: M&A – Uber / Careem |
| 14 | | Deal of the Year: Project Finance – Taweelah Reverse Osmosis Independent Water Plant Project |
| 15 | | Regional Law Firm of the Year |
| 16 | | Best Legal Advice Provision for UHNW individuals – MENA Awards 2020 |
| 17 | The European Tax Awards | Middle East Tax Law Firm of the Year |
| 18 | Lexis Middle East- Law Firm Awards | Regional Law Firm Practical Guidance Award |

Korea Group Deals & Cases

저희 알타미미 한국팀의 2020 하반기 주요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UAE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국내 대기업의 2, 3심 소송 대리 및 최종 승소

국내 모 대기업은 중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업체가 두바이법원에서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이후, 저희 알타미미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고, 본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 및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에서는 중재합의와 관련한 서명권이 별도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를 간과할 시 중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더라도 다시 현지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타미미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개별 재판부 별로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상대방의 중재판정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담당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명한 세계적 중재지인 Global Arbitration Review (GAR)에도 소개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자문

저희 알타미미는 중동 각 국가들의 법률에 기반한 코로나19 사태의 해석 및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방안 및 이에 대한 아국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수의 국내 기업에 활발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UAE,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등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상 코로나19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및 관련 판례 등에 자문하는 등 아국기업들의 향후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건설사 현지 원전사업 운영을 위한 설립 자문

저희 알타미미에서는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현지 법인, 지사/연락사무소 등 사업활동에 가장 적합한 설립 유형 등을 포함하여 설립 초기부터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규모 건설사의 원전사업 운영을 위한 설립 자문을 수행하며, UAE에서는 현지 사업 운영 시 필수 요건인 스폰서 선임없이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규제기관에 신규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최종적으로 스폰서 선임요건을 면제받는 지사의 설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Westinghouse 이후 두번째로, 아국 업체로는 최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20년 12월 1일부로 회사법 (Commercial Companies Law – Federal Law No. 2 of 2015)을 대폭 개정하여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업운영 시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했던 아랍에미리트 국적자의 지분 보유 요건을 없애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된 법령은 관보 (Official Gazette)에 게재 후, 약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올해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현지 기관의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동 8개국 PPP 법률 및 민관협력프로젝트 관련 자문

저희 알타미미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중동국가의 민관협력프로젝트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와 관련하여 국가별 주요 PPP 법제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본 자문 건을 직접 수행한 윤덕근 변호사는 GCC 6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및 이집트, 이라크 등 총 8개국가의 PPP 법률을 비교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추진중인 PPP 프로젝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리서치 보고서를 국문으로 제공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중동8개국외에도 전세계 30여개국을 아우르는 PPP 관련 책자를 국내 주요 건설사들에 배포하였습니다.

UAE 원격진료 관련 법률자문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국내·외에서 더욱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이러한 시류에 맞물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AE 지사 (이하 “보건원”)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아 UAE 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 검토는 물론 향후 국내의 료기관 및 의료진이 UAE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7년부터 보건원에서 위촉하는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전문위원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하지원 변호사와 강윤정 연구원이 담당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관련 자문

2020년 처음 도입된 경제적 실질 정책에 따라 UAE 는 작년 연말 말일까지 적용대상기업들에 반드시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추고, 관련 당국에 통지함은 물론 세부자료와 함께 경제적 실질요건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알타미미는 한국가스공사 및 국내에너지기업이 현지에 설립한 합작에너지투자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국기업들에 경제적 실질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Korea Group News

1. 알타미미, ALB Korea Law Award Finalist로 선정

Thomson Reuters 소속의 아시아지역 법률전문 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사전 시장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판정단 투표를 통해, 한국 우수 로펌 및 분야별 우수 로펌/기업법무팀/deal 등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ALB Korea Law Award 2020 에서 알타미미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 “Korea Practice Foreign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업무 해외로펌)”
- “M&A Deal of the Year (올해의 M&A 딜)”

2. 알타미미 한국팀, 리걸타임즈 창간 13주년 특집호에 소개

리걸타임즈 창간13주년 특집호에 저희 알타미미가 한국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명문로펌 중 한 곳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전문을 통해 올 한해 알타미미 한국팀의 활약상과 업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사 보기: <https://lnkd.in/deNxrMf>

3. 알타미미 한국팀,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강의

알타미미 한국팀은 지난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교육대상으로 선발된 30여명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한 “제10기 Global Commercial 전문가 과정”에서 중동 국가에서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법률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강의 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총 12시간에 걸쳐 알타미미 한국팀의 3명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등 알타미미가 사무소를 운영하는 각 국가의 대표 변호사들이 해당국가에서의 한국기업의 설립, 운영 등에 대비한 국가별 법률 가이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대한상사중재원과 조인트 웨비나 개최

하지원 변호사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프리카 등을 아우르는 알타미미의 현지 국제분쟁 중재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2월 10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주최로 “Playbook: Managing Arbitration involving the Middle East and Africa region” 을 주제로 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웨비나에서 각국의 변호사들은 그간의 다양한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분쟁/중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아래 다시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wi1rs5JFQIs>

5. 알타미미 한국팀, 김장법률사무소와 해상 및 해외건설 관련 웨비나 개최

알타미미 한국팀은 지난 10월 27일,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해외 프로젝트 위험관리’를 주제로 해상 및 해외건설 관련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본 웨비나에서는 AI Tamimi & Company의 설립자이신 Essam Al Tamimi 회장께서 직접 환영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알타미미 한국팀은 각각 아래의 중동 관련 해상 해외 건설 이슈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 오마르 변호사 & 하지원 변호사 - 코로나 이후 중동지역 내 해상 관련 업데이트 (선박압류 등)
- 송형민 변호사 - 사우디 법률 및 샤리아 원칙 하에서의 불가항력
- 윤덕근 변호사 - 중동에서의 하도급 관련 쟁점 및 유의사항

자세한 발표내용은 아래 다시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tamimi.com/insights/video-gallery/risk-management-for-overseas-projects/>

6. 송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올촌과 “사우디아라비아” 조세 대응 세미나 개최

송형민 변호사는 조세팀의 Anas Salhieh 회계사와 법무법인(유) 올촌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8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과세 강화 경향에 따른 과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웨비나를 성공리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웨비나에서 송형민 변호사는 “Tax Dispute 절차 및 Settlement, Mutual Agreement Procedure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의 다수대기업의 사우디 내 조세 자문 및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아래 다시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웨비나 다시보기: <https://lnkd.in/dP4qQBY>

7. 하지원 변호사, 카타르대사관 주최 세미나 발표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주카타르대사관과 해외건설수주지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카타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카타르 노동법과 이에 대한 아국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주카타르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orea Group News

8. 윤덕근 변호사, 해외건설협회 UAE 세미나 발표

지난 10월 19일, 윤덕근 변호사는 주UAE한국대사관과 해외건설협회가 개최한 “UAE 코로나 상황 및 건설 시장동향”을 주제로 하는 화상 세미나에서 UAE 주재국 및 중동지역 내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건설 분쟁 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9. 윤덕근 변호사, 대한변협 강의

윤덕근 변호사는 지난 11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KBA)와 한인세계법률가회 (IAKL)가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웨비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윤덕근 변호사는 두바이에서 활동 중인 한국 변호사로서,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으나 방법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한국 청년변호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하며 본인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10. 윤덕근 변호사, 주쿠웨이트 대사관 주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발표

윤덕근 변호사는 지난 12월 22일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서 쿠웨이트에 진출한 건설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쿠웨이트 법에 따른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AITamimiCompany



AI Tamimi & Company

www.tamimi.com



التميمي و مستشاروه
ALTAMIMI & CO.